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 유 서

ALM 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적립이율을 장기간(최장 10 년)에 걸쳐 보장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회사 재무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금보험 개발을 통해 연금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확 인 서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6년 2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윤 기 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하나 SAFE 연금보험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범위
(무)하나 SAFE 연금보험	종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형 [정액, 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1형 (10년 이율확정형)	확정연금형 [7·10·15·20년형]	개인연금형
2형 (7년 이율확정형)		
3형 (5년 이율확정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2.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일시납	- 개인연금형 :45~80세 - 부부연금형 :48~80세	◎ 종신 -. 제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2 보험기간 제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단,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한 날로부터 1형의 경우는 10년, 2·3형의 경우는 7년 이상 경과한 나이에 한함.

3. 가입나이

- 1형 :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10)세
- 2형·3형 :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7)세

4. 납입보험료 한도

· 100만원 ~ 50억원

5.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6.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일시납보험료의 100%로 함.

7.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8.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 3형(5년 이율확정형)별로 각각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류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최초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공시 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 확정기간”이라 한다) 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율확정기간중

$$\text{공시이율}(\%) = \left\{ \frac{A+B}{2} - 1\% \right\} \pm \text{조정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left\{ \frac{A+B}{2} - 1\% \right\}$$

A : 이율 확정기간이 10년, 5년인 경우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0년만기, 5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3번째 영업일에서 12번째 영업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사업방법서의 공시이율 산출에 적용하는 국고채 및 회사채의 수익률 평균값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율확정기간이 7년인 경우는 위에서 계산한 이율확정기간 10년과 5년의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을 직선보간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B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무보증 AAA 회사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

을 매월 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2) 이율확정기간 이후

$$\text{공시 이율}(\%) = \left\{ \frac{A+B}{2} \right\} \pm \text{조정 이율}$$

$$\text{공시 기준 이율}(\%) = \left\{ \frac{A+B}{2} \right\}$$

A : 지표금리 수익률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수익률”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bullet A(\%) = (A_1 + A_2) / 2$$

- A₁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로 한다.

- A₂ :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AAA 회사채 최종호가 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로 한다.

$$\text{- 가중이동평균이율}(A_i) = [M_i(-3) \times 1 + M_i(-2) \times 2 + M_i(-1) \times 3] / 6$$

단, M_i(-j)는 직전 j개월의 이율

B : 운용자산이익률로 이 계약에 할당된 운용자산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bullet B(\%) = B_1 - B_2$$

$$\text{- } B_1(\text{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2/6)}{\left[\begin{array}{l} \text{직전 7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rray} \right]}$$

$$\text{- } B_2(\text{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2/6)}{\left[\begin{array}{l} \text{직전 7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rray} \right]}$$

- 투자영업수익은 이 계약을 위하여 할당된 자산(현·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기타자산)에 의한 수익을 말한다.

-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비용에 회사 운용자산 대비 이 계약을 위하여 할당한 자산의 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말한다.

(3) 조정이율

시장금리의 대표성과 객관성 및 실제금리 적용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국고채, AAA 회사채를 지표금리로 사용하지만 과거 지표금리가 장래에 적용됨으로써 실제 적용시점의 지표금리와 금리차

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경우 실제 투자자산의 종류 및 구성비가 공시이율 산출식상의 포트폴리오(국고채 50%, AAA 무보증회사채 50%)와는 다르게 되므로, 투자되는 자산의 수익률(이율확정기간 중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투자될 자산의 예상수익률,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에 대하여는 이미 투자된 자산의 현재 수익률과 향후 투자될 자산의 예상수익률의 추정 가중평균값)을 고려하여 조정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다.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의 종료일 전까지 동일한 이율확정기간(1형(10년이율확정형)의 경우 10년, 2형(7년이율확정형)의 경우 7년, 3형(5년이율확정형)의 경우 5년)의 재설정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라. ‘다’호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재설정 되는 경우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나’호에서 정한 최초의 이율확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의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하며,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동안 변동없이 확정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가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마. ‘다’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율확정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제 1 보험기간의 잔여기간이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보다 짧은 경우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을 신청할 수 없다.
- 바. ‘다’호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율확정기간을 최초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사.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각각 1.0%와 0.5%의 금리(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한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험의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보험계약일부부터 각각 10년과 7년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 자.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율확정기간에 관계없이 연 복리 2.0%로 적용한다.

9. 기타

가.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초 이율확정기간 중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중

$$MVA = 1 - \left\{ \frac{1 + \text{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개시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단,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 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부터 1 개월 전에 통지한다.

다. 자산의 운용

(1)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2)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종류별 이율확정기간에 해당 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고채, 국내 신용평가기관 2 곳 이상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으로 평가받은 회사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자산으로 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신계약비율 최고한도를 적용한 신계약비」의 100 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